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질문] 피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월 임금 200만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 근로자 :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단축근무
- * 사업주 : 임금감소액 보전금 **40만원**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2 **법정기간 이외 기간(임신 12주 초과~36주 미만)** 임신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임신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단축근무(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허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피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월 임금 200만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 외 기간(임신 12주 초과~36주 미만)**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 근로자 : 시간비례임금은 1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전환 후에도 **190만원**(10만원↓) 수령가능
- * 사업주 : 임금감소액 보전금 **40만원**(임금보전 후 수령)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 (임신기, 직장복귀 전) **근로시간을 줄이는 맞춤형 패키지를 활용**해 주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 전일제 복귀

직장복귀율, 업무적응력 향상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고용문화개선 분야)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운영하려는 사업주(모든 기업 해당)

컨설팅 내용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직종) 발굴,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직무재설계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 조직문화 개선 및 정착 방안 수립, 우수사례 및 정보 제공, 지원제도 안내

지원내용 무료(컨설팅 소요비용 전액 지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신청접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서 직접 입력 및 구비서류 업로드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167, 1187

기업지원 예시(중소기업 기준)



생애주기별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2,160만원 지원 가능

[신규고용]

2018년 7월 1일 시간선택제 근로자 A 채용
2019년 6월 30일까지 인건비로 연 **720만원** 지원
사업장 내 신규채용 수요가 있고, A의 단시간 근로 사유가 해소되어 2019년 10월 1일 전일제 근무로 전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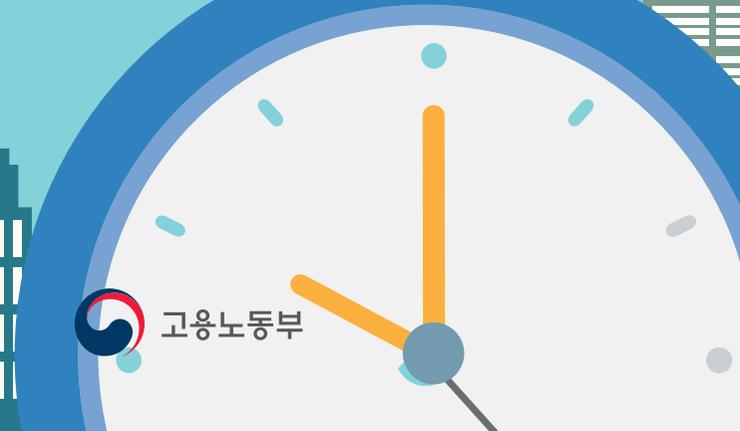
이후 A의 자녀가 2020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하고 있어 2020년 3월 2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주 25시간(월~금 5시간 근무) 또는 주 24시간(월, 수, 금 8시간 근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같은 기간 대체인력 B를 채용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임금감소액 보전금 연 최대 480만원, 간접노무비 연 24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연 720만원 등 총 1,440만원 지원

※ 대체인력 채용은 '대체인력뱅크'에서 서비스 제공
(☎ 수도권 1577-0221, 지방 1577-8505)



시간선택제 일자리

당신의 삶에 균형을 맞추세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요!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근로자

- +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임신·출산·육아도 함께할 수 있어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그 어느 쪽도 포기하기 어려운 가정과 직장생활을 모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



- + 공부하는 동시에 일이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도 됩니다.
- + 경제활동 지속으로 생애소득이 증가합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요!



효율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 마련

- +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특정 시간, 특정 기간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 + 갑작스러운 직원의 휴직·결근·이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인난 해소, 유능한 인재 확보



- +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학업의 병행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기업에 꼭 필요한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여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 생산성 향상

- +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 근로자의 업무피로도가 낮아져 근로손실(산업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이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실업자)에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요건

- 1 무기계약 체결
- 2 4대 사회보험 가입
- 3 주 15시간~30시간 근로
- 4 최저임금의 110% (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 5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 6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7 전일제 근로자 채용 시, 전일제 전환 기회 우선 부여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구분	1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중소·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지원절차



+ 양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자료실(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서식 다운로드
- * 서식제목 : [고용안정] 통합장려금(2017 고용안정 제도 개편)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어려우신가요?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 다운로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검색란에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 입력 →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pdf)' 다운로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이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에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모든 사업주

지원요건

- 1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2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주 35시간*)
- 3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 5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양의 경우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보전확인 후 지원) :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 최대 1년간 지원 (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주 15~25시간 : 월 최대 40만원
 - 주 25~35시간 : 월 최대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30시간 : 월 40만원)
- + 간접노동비 : 중소·중견기업에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임금의 80% 한도)

지원절차



+ 시간선택제 전환관련 규정 예시는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 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 문의하기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